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환경공단간 업무협력 약정서

해외건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와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우리나라 환경사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 양 기관 간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약정(이하“약정”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약정은 협회와 공단 환경 분야에 대한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내용 및 범위)

협회와 공단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, 구체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- ① 해외 환경시설건설·개발, 운영·유지관리 및 PM/CM 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② 해외 각 국에 대한 환경분야의 전문가 파견사업, 개발 및 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③ 해외 환경 시장개척 지원사업, 민관 합동 수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④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지원
- ⑤ 해외 환경관련 세미나, 설명회 등의 공동 개최
- ⑥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활동

제 3 조 (실무 업무협의)

양 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기관 중 한 곳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4 조 (경비사용)

본 약정에서 규정한 협력내용 수행 시 발생하는 제경비의 지출 및 정산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약정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 (시행약정)

양 기관은 약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조내용의 상세한 범위, 방법, 절차 및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7 조 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

- ① 본 약정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본 약정의 증명을 위해 약정서를 2부 작성,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 년 2 월 25 일



해외건설협회

회장 이 재 균

이재균



한국환경공단

이사장 박 승 환

박승환